

제349회 임시회

2016. 7. 14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5년 6월 30일

3. 개정이유

-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여,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유통시장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,
-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폐지·신설되어 관계법령을 현행화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조정(안 제6조제2항)
 - 종전) 연 2.0% 복리
 - 개정)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로 정함.
- 관계법령 현행화(안 제8조의 별표 2 제2호라목)
 - 종전) 「농어촌특별조치법」 제2조
 - 개정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3조제1호, 제2호
 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호,
 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, 제3호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채권유통시장 상황 변동에 신속한 대응과 채권의 원활한 매출 및 유통을 위하여 지역개발채권(이하 “공채”라 함)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조정하는 등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.

※ 지방공기업법 제19조

-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-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채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적용하도록 하였음.

(현행) 공채의 발행이율은 연 2.0퍼센트 복리

(변경) 공채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연복리

- 안 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및 내용 중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과 농·임·어업의 범위 근거 법률명을 변경함.

(현행)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

(변경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·제2호,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·제2호,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

- 안 제6조제2항의 개정과 관련해 검토해 보면,

- 현재 공채의 발행이율은, 기존 조례에 따라 연 2.0% 복리로 하되, 다만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에 따라 연 1.5% 복리로 운영되고 있음.

- 최근 기준금리 동향 및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바, 지자체의 발행이율이 유통금리를 상회하여 공채 발행 및 시장유통에 차질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.
 - 따라서, 공채의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르도록 조정하려는 것은 경제상황 및 공채시장상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공채 발행 및 건전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- ※ 2016년 6월 9일자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1.25%로 인하됨.

- 안 [별표 2]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및 내용 중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과 농·임·어업의 범위 근거 법률을 변경한 것은 「농어촌특별조치법」의 2009년 5월27일 폐지에 따른 것으로, 매입면제대상 근거법률을 변경한 것으로 타당함.

<참고자료>

□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

연월일	2014 08월 14일	2014 10월 15일	2015 03월 12일	2015 06월 11일	2016 06월 09일
기준금리(%)	2.25	2.00	1.75	1.50	1.25

※ 한국은행 홈페이지 www.bok.or.kr 에서 발취

□ 지역개발채권(공채) 연도별 발행 현황

(단위 : 억원)

연 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.6
발행액	1,156	1,127	1,248	1,348	1,552	668